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53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조인철・이개호・한정애

박민규 · 정진욱 · 신정훈

안도걸 • 박용갑 • 양부남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 •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제4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제49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	
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	
권·교환권 등(이하"입장권등"	
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	
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u>자신</u>	<u>입장</u>
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	권등의 판매 정가를
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을</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2. (생략)

-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생 략)

<신 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생략)

<신 설>

) ń	ો ઘો રી	ᅿ
<u>1.</u> 저	6조의2	<u>세 / 양</u> 달	ī Ť	<u>1반아</u>	-04
<u>입장</u>	·권등을	부정판	· 라메현	<u>가</u>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	와
같음	·)				
제49조의]2(벌칙)			
		.			
<삭_	제>				

2.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가중처벌) 상습적으로제4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u>수 있다.</u>